

별첨 #3

전형단계별 우대사항

취업지원 대상자별 가점기준 : 전형 단계별 만점의 10% 또는 5%

| 구분 | 10% 가산 | 5% 가산 |
|----------------|---|---|
| 독립 유공자 | ·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| ·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|
| 국가 유공자 | ·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| ·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|
| 5.18 민주 유공자 | · 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| · 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|
| 특수임무 수행자 | ·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| ·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|
| 고엽제 후유의증 | ·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| ·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|
| 보훈보상 대상자 | ·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| ·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|

※ 가산점 적용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

장애인 : 전형 단계별 만점의 3% (취업지원대상자와 중복인정불가)

| 가점 | 항목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3% 가산 | ·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|